

#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일원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20.8.5.~8.26.)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##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1조 별 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평창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)**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평창군에 소재하고,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.

**제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29조(등록기준)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, 보유 차고 면적, 영업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61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)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18. 2. 12.>

####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(제61조 관련)

항 목	등 록 기 준
1. 등록기준 대수	<p>가.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: 50대 이상</p> <p>나. <u>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 소재하고,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: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</u></p>
2. 보유 차고의 면적(대당 최저면적) 또는 주차면수	<p>가. 면적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승용자동차: 13㎡ ~ 16㎡</li> <li>- 소형승합자동차: 15㎡ ~ 18㎡</li> <li>- 중형승합자동차: 23㎡ ~ 26㎡</li> </ul> <p>나. 주차면수기준: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</p>
3. 사무실(주사무소·영업소 및 예약소)	<p>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어 것. 다만, 무인 예약·배차·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.</p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과장 권혁수
연락처	(033) 330 - 2470